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11 선고 2021가단1315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양주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성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11.

주 문

1.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66분의 2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. 8. 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66분의 2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, 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0. 3. 4. 접수 제23996호로 마친, 같은 목록 제4, 5, 6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. 3. 4. 접수 제619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 정효채

별지